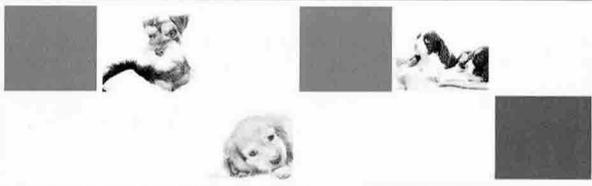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점검 사항 안내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규정을 안내하오니, 임상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점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변경신고를 통해 진료수의사 신고(등록)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수의사가 병원내에서 동물진료업무를 행할 경우 동물병원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만간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전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지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불필요한 처분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점검 사항	관련 조항	처분 규정	비고
1 본인인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않은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폐사진단서는 예외)하거나,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32조 제2항, 법제41조, 영 별표2 제2호,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6월 - 2차 면허효력정지 9월 - 3차 면허효력정지 12월 	
2 본인인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2조 제3항,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9호 자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1월 - 2차 면허효력정지 3월 - 3차 면허효력정지 12월 	
3 <u>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은 경우</u> (보존기간 1년, ※마약류약품 처방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2년간)	법 제13조 제1항, 법 제41조, 영 별표2 제3호,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9호 자목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50만원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15일 - 2차 면허효력정지 1월 - 3차 면허효력정지 6월 	
4 <u>동물병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u>	법 제33조,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제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경고 - 2차 시설보완시까지 업무정지 - 3차 업무정지 12월 	

	점검 사항	관련 조항	처분 규정	비고
5	<u>동물병원 개설자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수 의사 중 관리수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u>	법 제17조의2 제2항, 법 제41조 제2항, 영 별표2 제5호,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4호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50만원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업무정지 15일 - 2차 업무정지 1월 - 3차 업무정지 6월 	
6	동물병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법 제33조, 법 제41조 제2항, 영 별표2 제6호, 규칙 별표2 개별기준 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20만원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업무정지 1월 - 2차 업무정지 3월 - 3차 업무정지 12월 	
7	<u>진료수의사 등록 등 동물병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법 제17조 제3항, 법 제33조,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업무정지 1월 - 2차 업무정지 3월 - 3차 업무정지 12월 	
8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법 제32조, 영 제20조의2,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9호 사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15일 - 2차 면허효력정지 1월 - 3차 면허효력정지 6월 	
9	개설신고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6월 - 3차 업무정지 12월 	
10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법 제33조,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업무정지 3월 - 2차 업무정지 6월 - 3차 업무정지 12월 	
11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법 제32조, 영 제20조의2 제3호,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9호 바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15일 - 2차 면허효력정지 1월 - 3차 면허효력정지 6월 	
12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법 제32조 제2항 제5호,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15일 - 2차 면허효력정지 1월 - 3차 면허효력정지 6월 	
13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15일 - 2차 면허효력정지 1월 - 3차 면허효력정지 6월 	
14	유효기간이 지난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법 제32조, 영 제20조의2, 규칙 제23조 제3호, 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9호 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면허효력정지 15일 - 2차 면허효력정지 1월 - 3차 면허효력정지 6월 	